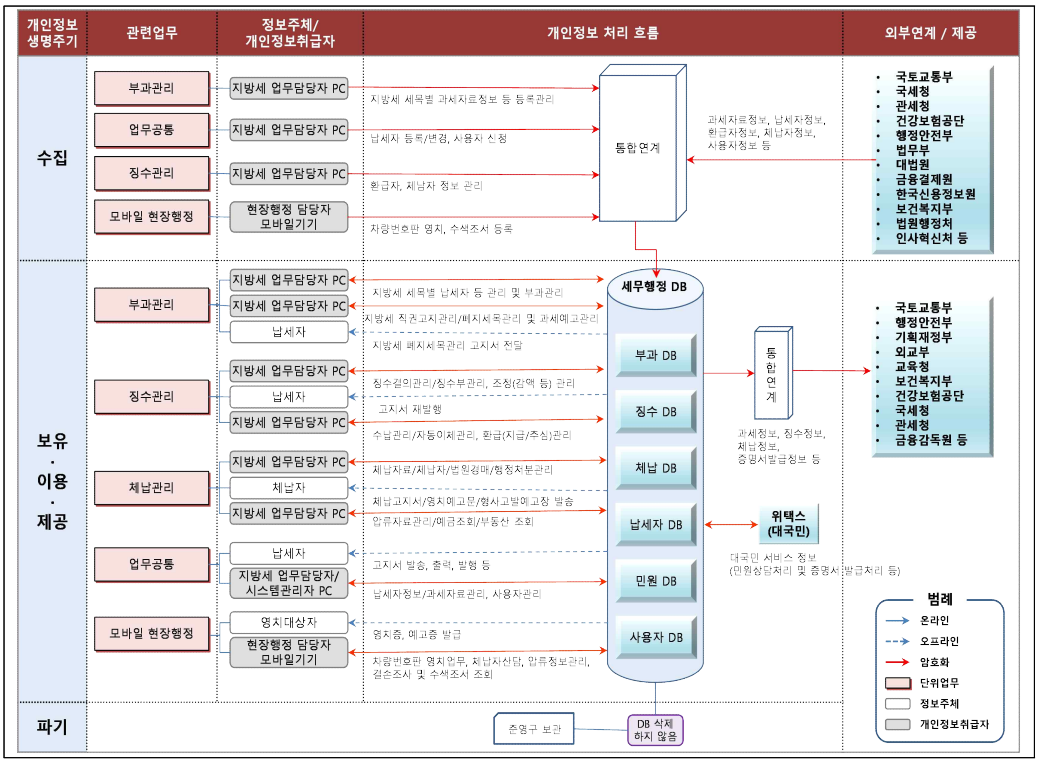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창원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케이씨에이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8.3
~
2026.9.2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“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”
• 첨단 정보기술 적용, 업무 프로세스 쇄신 등으로 ①맞춤형 납세편의, ②효율적 세입행정 ③지방세입 신뢰도 제고를 혁신적으로 달성
• 지방분권, 전국 고른 균형발전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외수입 행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현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세기본법 제135조(지방세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• 지방세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/table>

개인정보파일개요	파일명	개인정보 항목	제3자 제공	개인정보 처리 목적
	담배소비세 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
	대행신고납부자관리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관리
	등록면허세 관리	이름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
	세무조사 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	-	세무조사법인 및 개인이력관리
	자동차세 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자동차세부과관리
	재산세 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재산세 과세대장 (토지, 건물대장)

	주민세관리	이름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주민세 과세자료 관리
	지방세 결손관리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결손관련 자료관리
	지방세 수납관리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수납관리
	지방세 압류대장	이름, 집연락처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-	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
	지방세 감액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감액
	지방세 결의관리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징수결의업무 처리
	지방세 고지서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	-	고지서발송을위한 자료관리
	지방세공매 관리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공매관리
	지방세과오 납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과오납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
	지방세납세 자관리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납세자정보관리
	지방세반송 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	-	고지서반송관리
	지방세분납 관리	이름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고액납세자 분납처리 관리
	지방세자동 이체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	-	자동이체신청및 해지
	지방세자동 차영치관리	이름, 집주소	-	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정보관리
	지방세전자 수납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	-	전자수납내역 관리
	지방세제증 명관리	이름, 핸드폰(연락처)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-	지방세제증명관리
	지방세직권 고지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	-	납세자 정보관리
	지방세징수 유예관리	이름, 집주소, E-Mail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징수유예관리
	지방세체납 자관리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체납등에 대한 관리
	지방소득세 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소득세 부과관리
	지역자원시 설세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
	취득세관리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	-	취득세부과자료관리
	행정제재관 허사업관리	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부과및 징수
	행정제재영 치관리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	-	지방세 체납액 징수

<table>
<tr><td>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</td><td colspan="2">1. 개인정보 처리 흐름
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환급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
- 창원시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
-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

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
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'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 보호법령”을 반영
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을 반영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
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『지방세법』 제49조, 제130조,『지방세기본법』 제135조,『지방세기본법』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

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
- 내부 규정인『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』에는『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』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, '출력・복사 시 안전조치' 개인정보파일 등록, 파기, 접속기록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음.
-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'표준개인정보파일 목록'의 표준개인정보파일에 맞게 기존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재정비하여야 함.
-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,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・의무 및 행사방법을 수정하여야 하고,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권고함
-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/업무에 대한 위수탁 점검결과을 보고하여야 함
-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유노출 방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-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・의무 및 행사방법을 수정하여야 하고, 제3자 제공 내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공개)
- 내부관리계획 수정
- 대상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하도록 개선
-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점검 (위수탁 현황 점검결과 보고)
- 개인정보파일 등록 (표준개인정보파일 기준)
- 개인정보 출력시 보호조치 강화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3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4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
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음</td></tr>
</table>

	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 •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,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.